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76호
------	-------

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서승필 의원 외 4명
제출연월일	2022. 11. 14.

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호	제176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4.

대표발의자 : 서승필

공동발의자 : 조용훈,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1.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사업자, 시민의 책무(안 제1조~제5조)
- 나. 관리·운영자의 지정, 업무, 준수사항 등 (안 제6조~제8조)
- 다. 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안 제9조~제10조)
- 라. 실태평가(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 제25조, 제43조제1항제3호
「도로법」 제61조
-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14. ~ 11. 18.(5일간)

□ 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운영·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거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자·운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논산시에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관리·운영자 업무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의류수거함 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재활용 가능한 의류 수거를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거함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5.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제9조(수거함 설치기준) 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시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크게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6.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일으켜 이동이 필요한 곳

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운영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제6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실태평가) 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자 지정 및 관리·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평가 계획을 사전에 관리·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서승필 의원 외 4명

[별지 제3호 서식]

1. 관리번호 부착

관리번호 : - 호
운영자(상호) :
연 락 처 :

2. 배출가능 종류 안내문

배출 가능한 제품 : 의류, 신발, 가방, 담요(솜이불 제외), 누비이불, 침대커버, 커튼, 카펫, 모자 등 ※ 이외의 품목은 제외

※ 관리번호, 안내문 크기 및 부착위치는 의류수거함 규격 등을 고려하여 제작 및 부착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 9 (생략)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